

●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-22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8월 28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전파법령위반 무선국(정기검사불응) 행정처분 통지 내역

1. 근거법령: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
2. 법령위반사항: 정기검사불응
3. 처분내역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(2025. 8. 12. ~ 2025. 9. 11.까지)
4. 처분일자: 2025. 8. 12.
5. 송달대상 및 내역

번호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시설자주소	비 고
1	41-2000-20-0000004	1201세진호	이○국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	

6. 참고사항

- 가.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)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,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, ☎ 052-231-8935, Fax 052-231-89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